



문서번호	도시재생과-5
결재일자	2016.1.4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부구청장 방침 제2호

주무관	사회적경제팀장	도시재생과장 직무대리	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	부구청장
조현용	김종선	황규영	최성연	전결 01/04 이비오
협조	법제팀장 법률전문관	이상수 원종배		

**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및
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계획**

2016. 1.



도시재생과
(사회적경제팀)

사전 검토 사항

∴ 해당사항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항 목	검 토 여 부
사 업 구 분	신규사업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공약(약속)사업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계속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인센티브/공모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
소 통 분 야 고 려 사 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구 민 : 유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 ● 전 문 가 : 유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 ● 이 해 당 사 자 : 유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여 성 친 화 도 시	성 평 등 <input type="checkbox"/> 안 전 · 편 의 <input type="checkbox"/> 가 족 · 공 동 체 회 복 <input type="checkbox"/> 여 성 참 여 <input type="checkbox"/>
기 타 고 려 사 항	일 자 리 <input type="checkbox"/> 환 경 영 향 <input type="checkbox"/> 안 전 <input type="checkbox"/> 유 지 비 용 <input type="checkbox"/> 바 른 공 공 언 어 <input type="checkbox"/> 성 인 지 <input type="checkbox"/> 취 약 계 층 <input type="checkbox"/> 장 애 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디 자 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갈 등 발 생 요 인 <input type="checkbox"/>
타 자원 활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중 앙 부 처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● 서 울 시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● 기 업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● 민 간 단 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언 론 홍 보 계 획	기 획 보 도 <input type="checkbox"/> 보 도 자 료 <input type="checkbox"/> S D T V <input type="checkbox"/> 성 동 뉴 스 레 터 <input type="checkbox"/> 성 동 구 소 식 지 <input type="checkbox"/> 기 고 문 <input type="checkbox"/> 전 자 행 정 서 비 스 <input type="checkbox"/> S N S <input type="checkbox"/> 기 타 (리 플릿 등) <input type="checkbox"/> 없 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
● 홍 보 제 목 :

● 중점 홍보사항

-
-

※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'홍보제목'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계획

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을 높이고자 조성된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관련 조례를 사전에 정비하고자 함.

I 추진 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6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
 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민간위탁을 할 수 없음.
-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(서울시 조례 제5967호, '15.7.30.)

II 개정 내용

1.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

□ 개정 이유

-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.

□ 주요 내용

- 사회적경제조직의 정의에 '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·비영리법인·단체'를 추가(안 제2조)
-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9조)
- 그 밖에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

2.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□ 개정 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민간위탁 규정을 삭제하고, 기금의 지원대상을 구체화함으로써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의 건실한 운용을 하고자 함.

□ 주요 내용

- 사회적경제조직 및 사회적금융의 용어를 정비함(안 제2조)
- 기금 지원대상(사용 용도)의 범위를 구체화 함(안 제4조)
 - 소셜벤처기업, 사회적금융 수행기관(예시: 논골신흥 등)을 추가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포함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함(안 제6조)
 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개정사항 반영('16. 1. 1. 시행)
- 기금의 관리에 있어 민간위탁 가능 규정을 삭제함(안 제7조)
 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개정('16. 1. 1. 시행)으로 기금의 민간위탁이 금지됨에 따라 해당 부분 삭제

Ⅲ 추진 일정

- '16. 1. 5. ~ 1. 25. :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 평가 등 실시
- '16. 1. 26. : 조례규칙심의회 개최(예정)
- '16. 2. 17. ~ 2. 29. : 제222회 임시회

- 붙임 1. 입법예고문 2부.
2. 조례개정안 2부. 끝.